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은행의 정기주주총회 보고하여야 하는 대상 구체화(안 제24조제3항 신설)

가. 제·개정 이유

- 개정('23.3.21. 공포, '23.9.22. 시행) 「은행법」은 은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대출 및 지급보증 이용자에 대해 해당 회계연도 중 신규 발생한 채권 재조정 현황”을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규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은행법 시행령」으로 구체화할 필요

나. 제·개정 내용

- 현행 「은행업 감독규정」 제41조에서 대출 및 지급보증 지원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업체로서 해당 회계연도 중 신규발생한 채권 재조정 업체 현황 및 동 업체에 대한 채권재조정 내역 등을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참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100억원으로 구체화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특이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은행이 정기주주총회 보고대상 구체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2. 은행의 영업 일부폐쇄 및 일부의 양도·양수시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을 구체화(안 제24조의9 제5항 신설 및 제6항)

가. 개정 이유

- 개정('23.3.21. 공포, '23.9.22. 시행) 「은행법」은 은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의 폐업”에 대해 금융위 인가를 받도록 규정
- 현행 「은행법」은 은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양수”에 대해 금융위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은행법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를 은행의 고유·겸영업무 일부로 구체화하고 있어 중요한 일부의 기준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부수업무 일부의 양도·양수는 금융위 인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정비하기 위함

나. 개정 내용

- 은행이 영업을 일부폐업 또는 양도하는 경우 “중요한 일부”를 해당 영업부문의 자산액, 총이익이 전체(자산총액 또는 총이익)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로 구체화
- 은행이 영업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부문 관련 자산액, 총이익, 총부채가 전체(자산총액, 총이익, 부채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 구체화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없음

라. 입법효과

- 영업의 중요한 일부를 폐업, 양도·양수시 금융위 인가 대상이 되는 기준을 구체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

3.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4)

가. 개정 이유

- 개정('23.3.21. 공포, '23.9.22. 시행) 「은행법」은 은행이 법 제43조의4 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주주총회에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고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나. 개정 내용

- 「은행법」 제43조의4제1항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3천만원 이하로 구체화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없음

라. 입법효과

- 은행의 정기주주총회 보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특이사항 없음